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기준에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법률에 규정〉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49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4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12. 27.
- (3) 회 부 일 : 2024. 12.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인력기준에 발달재활사¹⁾를 포함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 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u>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한 기관으로서 시설 및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u> ----- -----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1)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증 교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함.

현행	개정안
<신설> ⑤ ~ ⑩ (생략)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4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⑤ ~ ⑩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참고자료 1: 발달재활서비스 개요).²⁾

-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총 10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함.

□ 이러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³⁾ [별표1]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중 제공 인력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이수자임.

-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제3조⁴⁾에서 명시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제3조(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다목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은 언어재활사로 한다.

사람일 것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 개정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중 제공 인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공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① 각각의 수요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를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우려, ② 발달재활사 자격 신설 시 기존 수행인력(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등)과 서비스 영역 중복 발생, ③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독립된 학제, 관련 학회 및 협회 설립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5)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3호) 검토보고서 중 보건복지부 의견 참조

□ 또한 하위 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제공 인력에 관한 기준만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 적절한지에 관해 검토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관리의 효율 및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시행규칙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일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하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의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은 각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과 같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⁶⁾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에 ‘발달재활사’를 포함하는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등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기관장 1인과 제공인력 1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에서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법적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 장애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최대 25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 (서비스 영역) 언어, 청능, 미술심리, 음악, 행동발달, 놀이심리, 재활심리, 심리운동, 감각발달, 운동발달 등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제공기관에서 1:1 서비스 제공 원칙
 -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 (제공기관) 민간(사설)발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2,615개소('23년 말 기준)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88,415	94,204	99,857	127,032	138,288
이용인원	78,782	84,411	91,044	97,469	산출중

* 국비(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